

정 관

휴젤 주식회사

정 관

제 1 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휴젤 주식회사라고 부른다. 영문으로는 Hugel, Inc.(약호 Hugel)이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성형관련 제제의 개발, 제조, 판매 무역업
- ② 생물의학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무역업
- ③ 의약품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제조업
- ④ 의약품 원료 및 중간체 제조업
- ⑤ 화장품 소재 및 첨가물 제조업
- ⑥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 ⑦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용역업
- ⑧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 ⑨ 건강기능식품 등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입판매업
- ⑩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 ⑪ 위 각 호와 관련한 무역(수출 및 수입)업
- ⑫ 위 각 호와 관련한 도매 및 소매업
- ⑬ 경영컨설팅
- ⑭ 투자자문업
- ⑮ 엔젤투자 및 창업 인큐베이팅(엑셀러레이팅)
- ⑯ 인체조직 유통분배업
- ⑰ 인체조직 수입업
- ⑱ 상기의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회사의 본점은 강원도 춘천시에 둔다.
-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공장, 사무소, 사업장을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ugel.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는 설립시에 400,000주(1주의 금액 500원

기준)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4 범위 이내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종류주식의 최초 발행가액과 미지급 배당금을 합한 금액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분배한다. 다만, 종류주식 발행시에 이사회는, 종류주식의 최초 발행가액과 그에 대하여 납입일로부터 잔여재산분배일까지 연 복리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종류주식의 주주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분배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잔여재산 분배율과 동률의 잔여재산 분배를 한 후, 추가 잔여 재산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다만, 종류주식 발행시 이사회는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하여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을 배정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⑥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되,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종류주식 발행시 이사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제8항 내지 제11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종류주식은 발행시 이사회의 결정으로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신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종류주식 수와 동수로 한다.
3. 신주식의 발행가액과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전환비율 혹은 전환가격의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4.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⑨ 종류주식은 발행시 이사회의 결정으로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신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종류주식 수와 동수로 한다.
3. 신주식의 발행가액과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전환비율 혹은 전환가격의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⑩ 종류주식은 발행시 이사회의 결정으로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 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나. 회사의 배당 가능한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3.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주춤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⑪ 종류주식은 발행시 이사회의 결정으로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 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되, 이사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행일의 익일부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상환청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청구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나. 회사의 배당 가능한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3.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 시 이사회의 결정으로 현금으로만 상환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⑫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⑬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

제1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권리를 행사할 날로부터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신주인수권)

-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재무구조 개선,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4조(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15년 내 행사할 수 있다.

⑨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

제15조의 2(우리사주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다만,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의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 보다 낮은 때에는 권면액으로 한다.
-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행사기간 동안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6조의2(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 사업구조의 개편, 시설투자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제 3 장 사채

제 17조(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재무구조 개선,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재무구조 개선,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20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21조(소집시기)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2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집행 임원이 소집한다.
- ② 대표집행임원의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소집권자를 정한다.

제23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서울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본점의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집행임원으로 한다.
- ② 대표집행임원이 불참하거나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 출석주주의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의장을 선임한다.

제26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8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주주총회의 의사록)

-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 사 · 이 사 회 · 집행임원

제1절 이사

제33조(이사의 수)

-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②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4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삭제 2015.03.30)

제36조(이사의 직무) (삭제 2017.07.14)

제37조(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8조의2(이사 및 집행임원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와 집행임원의 책임을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이사회

제3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각 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⑥ (삭제 2017.07.14)

제40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 또는 동영상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1조(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2(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감사위원회
 -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
 -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3 절 대표집행임원 및 집행임원

제43조(집행임원 및 대표집행임원의 선임)

- ① 회사는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을 둔다.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수, 직책, 보수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임원을 선임한다.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감독 아래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담하고,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 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
- ③ 회사가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을 두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한다.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 ④ 집행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4조(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직무)

- ① 대표집행임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집행임원은 대표집행임원을 보좌하고 회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 ③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에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45조(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1조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독립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제5항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⑦ 감사위원회 위원인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의2(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 ① 제45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제46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대표는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제47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을 승인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⑧ 제7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8조(감사록)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9조 (삭제 2016.03.25)

제50조 (삭제 2016.03.25)

제 7 장 회 계

제51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① 대표집행임원은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대표집행임원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집행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집행임원은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집행임원은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대표집행임원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5조(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5조의2(분기배당)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7. 당해 사업연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 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 ⑤ 제9조2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56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 ③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 8 장 보칙

제5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결의 및 상사에 대한 법규,

기타 법령에 의거한다.

제58조(내규제정)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부 칙

1. 본 정관은 200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정관은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정관은 201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본 정관은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 본 정관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7. 본 정관은 201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8. 본 정관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9. 본 정관은 201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정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정관은 201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정관은 2019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제19조의2, 제20조의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정관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3. 3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제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즉시 시행한다.

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 및 제3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 제38조의2, 제45조,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제1항의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수에 관한 규정은 2027년 7월 23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